

## 1. 개정이유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유예기간 동안 관련 제도 구체화를 위한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사용전지 관련 「전안법」 개정('22.10.18.) 및 시행('23.10.19.)

## 2. 주요내용

가. (검사기관 지정 절차) 확인시험기관 지정 절차에 안전성검사기관 심사 절차 등을 마련하고 인증기관 지정 절차를 보완(안 제2절 개정)

나. (안전성검사 결과)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검사 후 검사 결과서 발급 의무 및 서식 규정(안 제56조의2, 제56조의3, 별지 8의2 신설)

다.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한 표시시기(출고 전), 방법(마크, 번호 등) 등을 규정(안 제57조~제59조 개정)

\* 안전성검사 번호체계: 안전성검사기관의 명칭, 검사년도, 검사일련번호로 이루어진 번호체계 규정(안 별표 8 개정)

라. (안전기준 적용일) 안전성검사를 신청한 날 유효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안 제63조 개정)

마. (검사대상 세부품목) 재사용전지모듈 및 재사용전지시스템을 안전성검사 대상전기용품으로 지정(안 별표 3의2 신설)

바. (안전기준 목록)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제정 현황 반영(안 별표25 개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조제9항”을 “규칙 제3조제10항”으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7조의 제목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 번호 부여기준)”을 “(안전인증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성검사번호 부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안전인증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성검사번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규칙 제28조제4항 및”을 “규칙 제28조제4항,”으로, “규칙 제40조제3항”을 “규칙 제40조제3항 및 규칙 제55조의5제1항”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안전기준준수”를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및 안전성검사”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안전인증기관”을 각각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장제2절의 제목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절차”를 “안전인증기관·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절차”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 등)”을 “(안전인증기관등의 지정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을 “안전인증기관·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을”로, “규칙 제23”을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규칙 제23”으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 규칙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로, “제1호나목”을 “제1호 가목부터 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안전인증기관등의”로, “별표 2”를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2, 별표 4”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수수료)”를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안전인증기관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심사 등)”을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심사반 구성 및 심사의뢰)”를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심사반 구성 및 심사의뢰)”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및 제3항 중 “안전확인시험기관”을 각각 “안전인증기관등”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안전확인시험기관의 변경 및 재교부 신청)”을 “(안전인증기관등의 변경 및 재교부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안전인증기관등”으로 한다.

제2장제4절의2(제56조의2 및 제5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절의2 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제56조의2(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에 해당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검사신청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신청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을 함께 검토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안전성검사기관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검사 결과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검사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검사 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안전성검사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56조의3(안전성검사 제품의 보완)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재사용전지시스템에 대한 검사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1회에 한하여 해당 전기용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적합 된 재사용전지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기관에 보완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된 시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적합 검사결과서를 발급하여 동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안전성검사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25조 본문 중 “안전인증기관”을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법 제15조제3항 또는 법 제23조제3항”을 “제15조제4항, 제23조제4항 또는 법 제34조의3제2항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안전인증기관”을 “안전인증기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시험결과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44조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시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시험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시험결과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49조제2호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57조 중 “그 신고를 한 자”를 “그 신고를 한 자, 안전검사를 받은 자”

로, “안전검사를”을 “안전성검사를 한 자 및”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 규칙 제55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표시등”으로 한다.

제58조 중 “표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 및 안전성검사표시등”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및 안전성검사표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마크는 안전 인증·안전확인신고”를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안전성검사 마크는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안전성검사”로 한다.

제63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규칙 제37”을 “규칙 제37조, 규칙 제48”로, “규칙 제48조”를 “규칙 제55조의8”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안전성검사”로 한다.

3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안전성검사를 신청한 날 별표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제3조 관련)**

품목	세부품목
1. 재사용전지	① 재사용전지모듈 ② 재사용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비고: 1. 재사용전지모듈은 시행규칙 별표 7의2 비고 가목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후 가공되어 재사용전지시스템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일상생활에서 전지(재사용전지시스템 포함)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재사용전지모듈은 재사용전지시스템으로 간주하며, 해당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별표 8의 제명 중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신고번호의”를 “안전인증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성검사번호”로 하고, 가목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안전성검사번호의 부여 및 식별방법

안전성검사기관의 명칭	-	01	0	0	0	0	0	0	1
①	②		③						

가) ①란에는 안전성검사기관의 명칭을 기재한다. 다만, 안전성검사의 명칭에는 그 약호를 사용할 수 있다.

나) ②란에는 안전성검사기관이 실시한 안전성검사의 연도별 끝자리 번호를 두 자리 숫자(예 : 2010년→10, 2011년→11, 2022년→22)로 기재한다.

다) ③란에는 안전성검사 일련번호를 여섯 자리 숫자로 기재한다.

별표 23 1호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을 “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성검사”로 하고, 2호 중 “안전확인신고”를 “안전확인신고·안전성검사”로, 비고 중 “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를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등이”로 한다.

별표 25의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재사용전지	재사용전지모듈	KC 10031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재사용전지시스템	KC 10031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별표 25의 4호 중 512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번호	안전기준번호	기준명	제정일자	개정일자	페이지	고시번호
512	KC 10031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2023-XX-XX			2023-XXX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8호의2 서식은 별지와 같다.

##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5호서식]

Serial No :

## CERTIFICATE OF CONFORMITY

TO WHOM IT MAY CONCERN :

MM/DD/YY

The Safety Certification Body **(or The Safety Test Body)** certifies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freely sold without any restriction under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Name of product	Name of model	Notification No

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

Country of destination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Remark :

Sincerely Yours,

Safety Certification Body (or Safety Test Body)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안전관리대상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u>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u> 말한다.</p> <p>2. ~ 7. (생략)</p> <p>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① <u>규칙 제3조제9항</u>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u>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u>(이하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lt;신 설&gt;</u></p> <p>② ~ ⑤ (생략)</p> <p>제7조(<u>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u>)</p>	<p>제2조(정의) ----- -----.</p> <p>1. ----- ----- ----- ----- <u>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u>-----.</p> <p>2. ~ 7. (현행과 같음)</p> <p>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① <u>규칙 제3조제10항</u>----- ----- ----- <u>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3의2와 같다.</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u>안전인증번호 · 안전확인신고</u>)</p>

번호 부여기준)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1조(사실확인서 발급) ① 규칙 제9조제5항 및 규칙 제10조제3항, 규칙 제28조제4항 및 규칙 제29조제3항,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안전기준준수 확인을 위한 시험결과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실확인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고번호 또는 안전성검사번호 부여기준) 안전인증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성검사번호-----.

제11조(사실확인서 발급) ① -----  
-----  
-- 규칙 제28조제4항, -----  
----- 규칙 제40조제3항  
및 규칙 제55조의5제1항-----  
-----  
-----  
--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및 안전성검사 -----  
-----  
-----  
-----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  
-----  
-----.

②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  
-----  
-----  
-----.

제2절

절차

제14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 등) ①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영제17조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신청수수료 및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전자수입인지 납부영수증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수입인지 납부를 확인하여 전자소인을 실시하고 전자소인 이후 관련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또한 지정범위 확대심사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②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분류 및 범위는 별표 2 또는 별표 5의 제품분류별,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지정한다.

제15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수수료) ①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안전인증기관·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제14조(안전인증기관등의 지정신청 등) ① 안전인증기관·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을 ---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규칙 제23---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 규칙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제1호가목부터 다목-----

② 안전인증기관등의 -----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2, 별표 4 -----

제15조(안전인증기관등 지정수수료) ① 안전인증기관등 -----

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③ (생략)

제16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심사 등) ① (생략)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시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국가기술표준원 공고)」에 따른다.

제17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심사반 구성 및 심사의뢰) ① 안

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반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2인 이상을 선정하되, 그 중 1인을 심사반장으로 선정하고 그 외 인원은 심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출된 신청서류 전반에 대하여 구성된 심사반에게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과의 적합여부에 대해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를 의뢰할

-----  
-----.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인증기관등 지정 심사반 구성 및 심사의뢰) ① 안전

인증기관등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안전인증기관등 -----  
-----  
-----

수 있다.

제18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변경 및 재교부 신청)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신설>

<신설>

-----.

제18조(안전인증기관등의 변경 및 재교부 신청) ① 안전인증기관등-----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절의2 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제56조의2(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에 해당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검사신청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신청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을 함께 검토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안전성검사기

<신 설>

관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검사 결과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검사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검사 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안전성검사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56조의3(안전성검사 제품의 보

완)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재사용전지시스템에 대한 검사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1회에 한하여 해당 전기용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적합된 재사용전지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기관에 보완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된 시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적합 검사결과서를 발급하여 동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안전성검사 업무를 종







3의 기타 필요한 표시 및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8조(표시시기) 전기용품 안전 인증표시등의 표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는 국내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출고 전에 표시하고, 수입제품으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할 경우에는 제품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제59조(표시방법) ① 제57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 안전확인신고의 표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마크는 안전 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와 인접하여 표시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2. 3. (생략)

② (생략)

제63조(안전기준의 적용) ①·②

5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표시등-----  
-----.

제58조(표시시기) -----  
-----  
-----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 및 안전성검사표시등-----  
-----  
-----  
-----  
-----.

제59조(표시방법) ① -----  
-----  
-----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및 안전성검사표시-----  
-----.

1.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안전성검사 마크는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안전성검사 -----  
-----.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안전기준의 적용) ①·②

(생략)

③ 전기용품안전기준 적용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신설>

4. 규칙 제20조, 규칙 제37조 또는 규칙 제48조에 따른 안전  
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  
자적합성확인의 표시가 있는  
전기용품은 제품 제조연월에  
유효한 안전기준

(신설)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은 안전성검사를 신청한 날

4. ----- 규칙 제37조, 규  
칙 제48-----  
-- 규칙 제55조의8-----  
---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  
합성확인 또는 안전성검사--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3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제3조 관련)

품 목	세부품목
1. 재 사 용 전 지	① 재사용전지모듈
	② 재사용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 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비고: 1. 재사용전지모듈은 시행규칙 별표 7의2 비고 가목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후 가공되어 재사용전지시스템에 사용하 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일상생활에서 전지(재사용전지시스템 포함)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재 사용전지모듈은 재사용전지시스템으

<p>로 간주하며, 해당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p> <p>3.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p>
--

[별표 8]

**제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신고번호의 부여기준 (제7  
조 관련)**

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여기준

- 1) · 2) (생략)
- 3) (신설)

[별표 8]

**제품의 안전인증번호 ·  
안전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성검사번호 부여기준 (제7조  
관련)**

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여기준

- 1) · 2) (현행과 같음)
- 3) 안전성검사번호의 부여 및 식별  
방법

안전성검사기관	-	0	0	0	0	0	0	1
의 명칭	1							
①	②	③						

가) ①란에는 안전성검사기관의  
명칭을 기재한다. 다만, 안전  
성검사의 명칭에는 그 약호를  
사용할 수 있다.

나) ②란에는 안전성검사기관이  
실시한 안전성검사의 연도별  
끝자리 번호를 두 자리 숫자  
(예 : 2010년→10, 2011년→

11, 2022년→22)로 기재한다.

다) ③란에는 안전성검사 일련번호를 여섯 자리 숫자로 기재한다.

나. (생략).

[별표 23]

**기타 필요한 표시**(제57조 관련)

1.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
2.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번호
3. ~ 7. (생략)

비고 :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 포장의 표시는 제1호부터

나. (현행과 같음)

[별표 23]

**기타 필요한 표시**(제57조 관련)

1.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 안전성검사의 마크
2.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안전성검사 번호
3. ~ 7. (현행과 같음)

비고 :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제7호까지 생략할 수 있다.

[별표 25]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제63조 관련)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안전기준 <신설>

4.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 개정, 폐지) 현황

있는 경우, 해당 제품 포장의 표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생략할 수 있다.

[별표 25] <개정>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제63조 관련)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안전기준 <신설>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재사용전지	재사용전지모듈	KC 10 03 1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재사용전지시스템	KC 10 03 1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4.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 개정, 폐지) 현황



■ [별지 제5호서식]

Serial No :

**CERTIFICATE OF CONFORMITY**

TO WHOM IT MAY CONCERN :

MM/DD/YY

The Safety Certification Body certifies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freely sold without any restriction under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Name of product	Name of model	Notification No

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

Country of destination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Remark :

Sincerely Yours,

Safety Certification Body 

210mm×297mm(복합지 80g/㎡ 또는 중량지 80g/㎡)

(신설)

■ [별지 제5호서식]

Serial No :

**CERTIFICATE OF CONFORMITY**

TO WHOM IT MAY CONCERN :

MM/DD/YY

The Safety Certification Body (or The Safety Test Body) certifies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freely sold without any restriction under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Name of product	Name of model	Notification No

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

Country of destination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Remark :

Sincerely Yours,

Safety Certification Body (or Safety Test Body) 

210mm×297mm(복합지 80g/㎡ 또는 중량지 80g/㎡)

■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검사 결과서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칭		 KOLAS 제 호
발행번호 :		
검사자 :		승인자 :
발행일자 :		
검사기관명 : 주소 :	검사기관장 직인	
제조자 : 주소 :		
안전기준 : 적용 검사항목 : 안전기준외의 적용기준 :		
검사대상제품명 : 모델(해당시) : 성격 : 수량 또는 크기 :		
검사결과 : 첨부자료 1. 검사결과 내용 2. 제품특기사항/KOLAS 성적서 번호(해당시) 3. 제품사진 4. 표시사항 및 주의 또는 경고문구		
검사판정에 대한 약정 부호 검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N/A(Not Applicable) 검사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P(Pass) 검사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F(Fail)		
검사기간 시료 접수일 : 검사 수행기간 :		
일반 요구사항 본 검사 결과서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승인 없이는 변경 및 수정할 수 없습니다. 본 검사 결과서의 검사 결과는 해당 검사 제품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기타사항(해당없는 경우, KOLAS 마크 및 내용 제외) 이 결과서는 국제시험기관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상호인정협정 (Mutual Arrangement)에 서명한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승인받은 분류에 대한 결과입니다.		